

소송명	원고·청구인	피고·피청구인	사안	원고대리인	계속 사건번호	제소항소상고일자 (소장 링크)	소송결과 (판결 링크)	판결개요	
K1	강제예입금 보상청구	군정법령에 의한 강제예금자	대한민국	원고는 1946년에 미군정이 실시한 일본 엔 강제예금 (군정법령57호) 으로 일본 엔을 예입했는데, 한일회담이 타결하여 1966년에 청구권자금이 제정되자, 강제예금한 일본은행은 대일민간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해서 국가에 보상을 청구했다.		서울민사지법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청구권은 헌법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상청구권이 아님이 분명하되, 청구권자금은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는 원칙만을 밝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가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방법이 없다고 해서 기각했다. (그 후 청구권신고법·청구권보상법이 제정되어, 군정법령57호에 의한 강제예금도 보상대상이 됐다.)
						서울고법 1969나2792	1969	1970. 6. 17기각	
K2	강제예입금보상청구 (2차)	군정법령에 의한 강제예금자	대한민국	K1사건과 같음.		서울민사지법			K1사건과 같음
						서울고법 1969나3731	1969	1970. 6. 5기각	
K3	청구권 관련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8. 15이후 대일민간청구권 취득자	A는 중국 한구 (漢口) 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1945. 8. 하순에야 해방 소식을 듣고, 사업자산을 같은 해 9. 2부터 9. 6까지 사이에 대만은행 한구 지점을 통하여 같은 은행 후쿠오카 (福岡) 지점으로 송금했다. 그러나 가본 해 9월 말에 대만은행은 연합국사령관의 명령으로 폐쇄되어 A는 송금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다. A는 A의 대만 은행 (그 후신으로 설립된 일본부역신용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했다. 청구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채권도 더 이상 일본국이나 그 국민에 대해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금법, 청구권신고법, 청구권보상법이 보상대상을 1945. 8. 15. 이전에 생긴 채권에 한정된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박원순 외1인	헌법재판소 1994헌마108	1994. 6. 3	1996.10.4각하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 구성 후 180일 이내로 되어있는데, 이 사건의 기본권 침해는 청구권 3법이 정립됐을 때이고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해서 각하했다. 단,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진정 입법부작위이므로, 청구 기간은 도과하지 않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3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다.	
K4	청구권 관련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8. 15이후 대일민간청구권 취득자	청구인은 중국 동북지방에 있던 일본국 소유 광산에서 3년간 피탈출려 모았던 일본국 화폐를 1945. 8. 21. 에 해방된 사실도 모르는 채 안동 (현 단동) 소재의 일본국 소유 은행에서 고향으로 송금했는데 그 직후 동 은행이 폐쇄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채권도 더 이상 일본국이나 그 국민에 대해 주장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금법, 청구권신고법, 청구권보상법이 보상대상을 1945. 8. 15. 이전에 생긴 채권에 한정된 것은 위헌이라고 해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이석연	헌법재판소 1994헌마204	1994. 9. 27	1996.10.31각하	위와 같음	
K5	피징용 부상자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강제징용 부상자	청구권보상법이 피징용 사망자에게 30만 원 보상을 지급하는 것만을 규정하여, 피징용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김 용 균	헌법재판소 1995헌마161	1995. 5. 30	1996.11.28각하	위와 같음	
K6	중재요청불이행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일 한국인 피징용 전상자 유족	청구인들은 군무원으로 동원되어 부상한 제일 한국인들인데, 일본정부는 국적조항으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하고, 한국정부는 제일 한국인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타결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조치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정부가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제일 한국인 피징용자의 보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에 의해 타결된 것이지에 대해 양국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한국정부에 양국간의 위와 같은 해석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회부를 해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이러한 공권력행사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최영도 임종인 김준곤 외 5인	헌법재판소 1998헌마206	1998. 6. 22	2000.3.30각하	정부는 한일 양국 모두로부터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제일 한국인 피징용부상자들 및 그 유족들로 하여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게 청구인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중재회부라는 특정한 방법을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국간의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의무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들이 이러한 공권력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우리나라 정부가 중재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각하했다.	
K7	보상금지급 종결 위헌 확인 헌법소원	대일민간청구권 소유자	청구인은 30년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일본의 보험회사와 조선총독부 체신국장이 해방 이전에 발행한 보험증권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1999년에 뒤늦게 알고, 정부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였으나, '대일민간청구권에 관한 보상금 지급 업무는 1977. 6. 30. 자로 종결되었고 보상 관련 법률도 1982. 12. 31. 자로 폐지되었으므로 불가능하다' 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업무 종결과 관련법 폐지의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1999헌마396	1999. 7. 2	1999.7.23각하	헌법재판소 발족 이전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청구 기간은 헌법재판소 구성 후 18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해서 각하했다.	
K8	미쓰비시 히로시마 정용공 소송	전 미쓰비시 히로시마 정용공 5명	정용으로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노동에 종사한 원고들이 일본에서 일본국과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J41사건), 최고재판소 계류중에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일본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한국법원에 제소했다.	이충희 최봉태 김미경 장영석 김진국 하성형 배근열 임진석 정재성 김미경 장영석 장완익	부산지법 2000가합7960	2000. 5. 1	2007.2.2기각	재판관할,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동일성 등에 대해서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했지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2007나4288	2007. 3. 6	2009.2.3기각	일본소송의 판결을 승인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위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2009다22549	2009. 3. 16	2012.5.24환송	일본판결은 한국헌법의 근본이념에 반하고, 시효완용은 신의칙에 위반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 지배에 직결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했다.	
					부산고법 2012나4497	2012. 06. 14	2013.7.30인용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했다.	
					대법원 2013다67587	2013. 08. 20	2018. 11. 29인용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 지배에 직결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K9	유골 인도 청구 소송	피정용 (군무원) 사망자 유족 5명	대한민국	1948년2월 및 5월에 조선 과도정부 부산연락소, 임시정부 일본과에 송환된 유골 인도를 청구했다.	김준곤 이충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	서울지법 2000가합88633	2000. 11. 28	2002. 6. 5기각 (확정)	피고가 유골을 보관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기각. 소송 과정에서 일본에서 송환된 것은 유골이 아니라 위패라는 것이 판명했기 때문에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고, 확정했다.
K10	유골 반환 부작위 헌법소원	피정용 (군무원) 사망자 유족 5명		K9사건 원고들이, 일본에서 유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 인도하지 않고, 사망 사실조차 통지하지 않고, 유골 인도를 청구한 후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김준곤 이충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	헌법재판소 2002헌마225	2002. 4. 1	2002.4.16기각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 수단이므로, 민사 소송이 진행중인 이 사건의 경우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기각했다.
K11	한일회담 문서 공개소송	일본군 전"위안부", 근로정신대,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강제동원 피해자, 원폭피복자, 유족 등100명	외교통상부장관	원고들은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등 문서 공개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에 소정의 '공개될 경우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원고들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일본정부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문서를 통해서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김진국 김강원 김준곤 이충희 최봉태 송해익 박선아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2002. 10. 11	2004.2.13 일부인용	일반 청구권에 관한 문서에 대해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2004누4682	2004. 3. 4	2005. 1. 11 항소취하	한국정부 (노무현정부) 는 항소를 취하하여, 관련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민간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공동위원회견해를 발표했다.
K12	신일철1차 소송	전 일본제철오사카 (大阪) · 야하타 (八幡) · 카마이시 (釜石) 제철소 정용공 4명	신일철주금	정용으로 일본제철에서 노동에 종사한 원고들이, 일본에서 국가와 신일철을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J53사건), 그 후 신일철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소했다.	장완의 김미경 김진국 박세경 오재창 좌진수 양태훈 이계영 시기룡 최봉태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6473	2005. 2. 28	2008.04.03 기각	일본판결을 받은 2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일본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기타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인격 동일성을 부정해서 청구를 기각했다. 예비적으로 소멸시효 성립도 인정했다. 다만, 청구권협정에 관해서는 외교보호권 만을 포기한 것이며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2008나49129	2008. 04. 24	2009.7.16기각	1심 결과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009다68620	2009. 09. 03	2012.5.24환소	일본판결은 한국헌법의 근본 이념에 반하여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음, 시효인용은 친의칙 위반,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 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원심에 환송했다.
						서울고법 2012나44947	2012. 06. 15	2013.7.10인용	원고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했다.
						대법원 2013다61381	2013. 08. 09	2018.10.30인용	한일청구권협정은 재산관계 정산을 위한 조약에 지나지 않고 불법한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용.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도 협정이 적용되지 않 협정의 효과는 외교보호권 포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별개의 견, 협정에 의해 원고들은 소송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집행절차	2019. 3. 7	2019.3.25	상표권2건, 특허 6건에 대한 압류신청 압류명령
K13	포스코 소송	정용·정병 피해자, 유족 150명	포스코	피고는 그 설립을 위해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등 청구권자금이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철학전쟁에 동조한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철과 기술제휴, 주식 상호보유를 하고 있고, 신일철주주로서 원고들의 법외 침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주총회에서 발언하는 등 노력해야하는 헌법상, 조리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했다고 해서 원고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준곤 이충희 최봉태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주경태 임성우 권영규 진상욱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42288 2007가합4013	2006. 5. 18	2007. 8. 17기각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기각. 단, "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된 피고로서는, 적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징용, 임금미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부여했다.
						서울고법 2007나 87872, 87889	2007. 09. 21	2011.2.24기각	피고는 당시 적절한 수속으로 청구권자금에서 투자를 받고 이미 상환했다고 해서 기각. 단, "피고는 국가와 협조하여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격적 자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여했다. 피고 포스코는 이를 받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 에 의해 설립되는 강제 동원피해자 지원 재단에 100억 원 거출하겠다고 표명했다.
K14	전 "위안부" 헌법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4명	외교통상부장관	민관공동위원회견해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범위외라고 정리되었는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된 외교상의 경로에 의한 해결이나 중재수속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차지훈 한택근 김진 심제환 장유식 원민경 김학승 이민종 이석태 조영선 한경수 조재현 박주민 김강원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주경태 임성우 권영규	헌법재판소 2006헌마788	2006. 7. 5	2011.8.30인용	헌법상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당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고, 한일청구권협정 3조의 수속에 따라 일본과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여, 청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작위의무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 작위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배상을 아직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위헌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정부의 보상 의무도 선언해야 한다는 1재판관의 보충의견, 청구권협정3조의 수속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정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하는 3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K15	피복자 헌법소원	원폭피복자 2542명	외교통상부 장관	민관공동위원회견해에서는, 원폭피복자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범위외라고 정리되었는데,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규정된 외교상의 경로에 의한 해결이나 중재수속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들은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되었다고 해서, 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	헌법재판소 2008헌마648	2008. 10. 29	2011.8.30인용	헌법상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당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고, 한일청구권협정 3조의 수속에 따라 일본과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여, 청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작위의무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 작위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배상을 아직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해서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위헌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정부의 보상 의무도 선언해야 한다는 1재판관의 보충의견, 청구권협정3조의 수속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정부의 재량 사항이라고 하는 3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K16	위로금등 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전 군무원 미수금 피해자 유족	태평양전쟁전후국의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한국정부는 2007. 12. "태평양전쟁전후국의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며 군인 군무원 정용공 등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 미수금 1인당 2000원으로 환산하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1, 656, 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았는데 지원금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대신하는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임성우 권영규 양상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43	2009. 2. 2	2009. 10. 23기각	
						서울고법 2009누36424	2009. 11. 26	2013. 9. 12기각 (확정)	

			것이라면 위 금액은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지급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박경화 하성협 배근열 임진식				
--	--	--	--	--------------------------	--	--	--	--

K17	위로금 등 지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전 군인 미수금 피해자 유족	태평양전쟁전후국의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한국정부는 2007. 12. "태평양전쟁전후국의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며 군인 군무원 징용공 등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 미수금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는 270,000원의 지급결정을 받았는데 지원금이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위 금액은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지급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권영규 양상열 여영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644	2009. 9. 4	2016. 4. 8기각	K19사건 합헌결정을 받아 기각했다.
K18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조사및국의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4조 1항 (위로금 2000만원 조항) 위헌 헌법소원	강제동원 피해자 (징용공) 유족		징용공으로 동원되어 일본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위로금을 피해자 1인당 2000만원으로 규정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조사및국의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4조 1항은 2000만원을 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해서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이영덕	헌법재판소 2010헌마620	2010. 10. 5	2015.12.23각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조사및국의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지급은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각하.
K19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환산조항 위헌제정·한일청구권협정등 헌법소원	K16사건 원고 서울행정법원		K16사건 원고는 한국 국민의 일본국·일본국민에 대한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해결했다고 하는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3항, 지원금 수령시에 소송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해서 헌법제정신청을 했다. K17사건 원고는 "태평양전쟁전후국의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 5조1항 (2000원 환산조항)에 대해 위헌제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위헌제정했다.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권영규 양상열 여영림	헌법재판소 2009헌바317 2010헌가74	2009. 11. 12 (소원) 2010. 7. 1 (제정)	2015.12.23각하·기각	한일청구권협정은 당해 사건 (K16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각하. 대통령령은 헌법소원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각하. 지원법의 2000원 환산조항에 대해서는 환율이나 양국 물가 상승률에 의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계산 방법이 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물가 상승률만을 보아도 93000배로 되어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하는 3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다.
K20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	재일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원고의 아버지는 군무원으로 남양제도에 동원되어, 오펜 팔 절단, 고막 파열 등의 장애를 입고, 전후 일본에 살다가 1996년 사망했다. 한국에 사는 원고는 유족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이 법률은 1945에서 1965. 6. 22. 까지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사람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기각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권영규 양상열 여영림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0403 서울고법 2011누10654	2010.10.22 2011. 2. 24	2011. 1. 27기각 (확정) 2013. 8. 30기각 (확정)	
K21	한일청구권협정 2조2호(a),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재일한국인 제외조항 헌법소원	K20사건 원고		K20사건에서 원고는 1945. 8. 15. 에서 1965. 6. 22. 까지 일본에 거주한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는 협정에 의한 해결에서 제외한 한일청구권협정 2조2호(a) 및 같은 기간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한 사람을 위로금 급부에서 제외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제정 신청을 했다. (원고의 아버지는 재일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지원법에 의한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속인인 원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 지급된 일본 조위금지급법의 적용도 받을 수 없었다.)	최봉태 이충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권영규 양상열 여영림	헌법재판소 2011헌바55	2011. 3. 17	2015.12.23각하·합헌	한일청구권협정 2조2호(a)에 대해서는 그 합헌·위헌이 당해 사건 (K20사건)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각하.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서는, 이 법률에 따른 위로금 지급은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며, 피해자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1차적으로 일본정부가 해야하고, 2000년에 일본에서 조위금이 지급된 것을 보아도, 이 조항이 일본 거주자를 제외한 것은 입법제량으로써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헌결정했다.
K22	위로금 등 지급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전 군인 실종자 유족 (미국 국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태평양전쟁전후국의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은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도 이 국적조항을 승계하고 있다. 원고는 군인으로서 중국에서 실종한 희생자의 딸인데, 일단 지급결정을 받은 후 원고가 미국 국적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결정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이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0772	2010.7.27	2011. 6. 10기각 (확정)	
K23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국적조항 헌법소원	K22사건 원고		K22사건에서 원고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의 국적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제정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를 했다.	김수교	헌법재판소 2011헌바139	2011. 7. 18	2015.12.23합헌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며, 위로금의 재원은 한국 국민의 세금이며 예산에도 한도가 있으므로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을 제외하는 것은 입법제량으로써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헌결정을 했다.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의 고통도 한국적 유족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3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다.
K24	위로금 등 지급 기각·각하처분 취소 청구소송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8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은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대상을, 1990. 9. 30. (한소 국교 수립의 날) 까지 사망자 유족에 한정하며,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을 제외하고 있다. 원고들 중 3명은 1990. 9. 30. 이후 사망자 유족이므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되고 5명은 한국 국적 없으므로 신청을 각하되었다. 원고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해서 지급 기각·각하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장완익 이윤택 심재환 이상희 박용일 손영실 윤지영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965 서울고법	2012.8.3 2012. 12. 24	2012. 11. 30기각 2016. 4. 21기각 (확정)	
K25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국적조항·사망시기 한정조항 헌법소원	K24사건 원고		K24사건에서 원고들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의 사망시기 한정 조항·국적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헌법제정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장완익 이윤택 심재환 이상희 박용일 손영실 윤지영	헌법재판소 2013헌바11	2013. 1. 29	2015.12.23합헌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고, 한소국교 수립 후는 생존자에 대한 영주 귀국 사업 등이 실시되어, 위로금의 재원은 한국 국민의 세금이며 예산에도 한도가 있으므로, 지급 대상은 1990. 9. 30. 까지 사망자에 한정하고 한국 국적 없는 유족을 제외하는 것은 입법제량으로써 합리적이라고 해서 합헌결정을 했다. 사망시기 한정조항의 합헌판단은 전 원일치, 국적 조항에 대해서는 한국적 없는 유족의 고통도 한국적 유족의 고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3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다.

K26	미쓰비시 나고야 근로정신대 소송	전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 유족 1명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들은 12~14살 때 여자근로정신대로 군수공장인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도덕공장에서 강제적으로 중노동에 종사했다. 원고들은 일본에서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 지법에 제소했다가 패소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임선숙 김정호 정재용 이상갑 임태호 김정희 정인기 김상훈	광주지법 2012가합10852	2012. 10. 24	2013.11.1인용	원고들이 동원 당시 국민학교 졸업 직후의 어린 여성였고 일본이 비준한 강제노동 금지 조약으로 절대적으로 강제노동을 금지된 대상였던 것을 강조하며,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광주고법 2013나5441	2013. 12. 10	2015.6.24인용	한국법원의 관할권, 구 미쓰비시와 피고의 동일성, 일본판결의 기판력, 시효·제척기간, 청구권협정에 의한 청구권 포기, 한국정부의 위로금 지급에 의한 해결완료론 등 미쓰비시 측에 모든 주장을 물리치고 청구를 인용했는데, 위자료 액은 1심 보다 약간 감액했다.
						대법원 2015다45420	2015. 7. 30	2018. 11. 29인용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 지배에 직결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K27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전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 피해자 4명의 유족 14명	후지코시	원고들은 12~14살 때 여자근로정신대로 군수공장인 토야마 후지코시 공장에서 강제적으로 중노동에 종사했다. 원고들은 일본에서 국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토야마 지법에 제소했다가 패소하고, 후지코시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김미경 장완익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1596	2013. 2. 14	2014.10.30인용	미쓰비시·신일철사건(K8, K12사건) 대법원판결 및 나고야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사건(K26사건) 광주지법판결의 논리를 답습하며 동원기간에 따라 피해자 1인당 1억 원 또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2014나58797	2014. 12. 10	2019.1.18인용	K12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9다3226		계류중	
						집행절차	2019. 3. 13 2019. 5. 1	2019. 3. 20	대성나찌유압공업주식 압류신청 압류명령 매각명령 신청
K28	신일철 2차소송	야하타 제철소·카마이시 제철소 전 정용공 8명	신일철주금	신일철 1차소송 (K12사건) 대법원판결 후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제소했다.	김미경 장완익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18795	2013. 3. 11	2015. 11. 13인용	합계 7억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2015나32310	2015. 12. 1	계류중	사망한 원고의 수계절차로 인해 지연
K29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정용공 2차소송	전 미쓰비시 히로시마 정용공 13명의 유족 72명	미쓰비시중공업	미쓰비시 히로시마 정용공 1차소송 (K8사건) 대법원판결 후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서 제소했다.	최봉태 하성렬 김미경 임계성 장완익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0010	2013. 7. 1	2016. 8. 25인용	피해자 1인당 9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용했다.
						서울고법 2016나2064327	2016. 9. 7	2019. 6. 27판결 예정	
K30	일본군"위안부"조정, 소송	나눔의 집 거주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명	일본국	일본국에 대해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조정 신청했는데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했다.	김강원	서울중앙지법 (조정) 2013머50479	2013. 8. 13	2015. 12. 30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법원은 2차례에 걸쳐 기일을 지정했는데 일본국은 출석하지 않고, 또 법원은 3차례에 걸쳐 응시의사 확인 서면을 송부했는데 일본국은 헤이그송달협약 13조를 근거로 수령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송) 2016가합505092	2016. 1. 28	계류중	
K31	피폭자손해배상청구	원폭피폭자 79명	대한민국	2011. 8. 30. 피폭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K15사건) 후,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양자협의 개시를 반복해서 제의 하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아, 문제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은 일본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상, 한국정부는 외교 경로에 의한 해결에 고집하지 않고 청구권협정 3조에 규정된 중재에 회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춘희 최봉태 송해익 임성우 양상열 곽경화 최보람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37074	2013. 8. 12	2015. 6. 26기각	한국정부의 조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정 기간의 교상의 경로에 의한 해결을 추구한 후 꼭 중재에 회부해야한다는 의무를 지게한 것이 아니고, 중재 회부에 들어가지 않는 한국정부의 부작위는 아직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2015나2036271	2015. 7. 16	2016. 1. 14기각	
						대법원 2016다205847	2016. 2. 2	2016. 5. 26 심리불속행기각	
K32	유족회 집단소송 (1차)	전 정용공·유족 252명	미쓰비시중공업 스미토모 중기계 공업 쇼와 전공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봉경 최성욱 조규철 장영기 박병준 홍순혁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9049	2013. 12. 9	계류중	2017. 2. 21 원고190명 소취하 또는 취하간주.
K33	미쓰비시 나고야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전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1인당 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임선숙 김정호 정재용 이상갑 임태호 김정희 정인기 김상훈	광주지법 2014가합1463	2014. 2. 27	2017. 8. 11인용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게 1억5000만 원, 부상자에게 1억2000만 원, 기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을 인용.
						광주고법 2017나13822	2017. 9. 7	2018.12.5인용	2018. 10. 30 대법원 판결 때까지 권리 행사에 대한 법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해서 소멸시효의 항변을 부정했다.
						대법원 2018다303653	2018. 12. 19	계류중	
K34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소송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	후지코시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미경 장완익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9863	2014. 4. 7	2016.11.23인용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2016나2084567	2016. 12. 13	2019. 1. 30인용	K12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9다216787		계류중	
						집행절차	2019. 3. 13 2019. 5. 1	2019. 3. 20	대성나찌유압공업주식 압류신청 압류명령 매각명령 신청
K35	"제국의위안부" 출판등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사건	나눔의 집 거주전 "위안부" 피해자 10명	박유하 이 1명	피고의 저서"제국의 위안부"중 "위안부"피해자와 대일본제국 군인은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 등의 기재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서적의 출판금지 (예비적으로 54개 표현 삭제)	양승봉 홍장미 이상희 박갑주 김수경 정연순 백승연 김진국	서울동부지법 2014가합10095	2014. 6. 17	2015.2.17일부인	34개 표현의 삭제를 명하고, 접근·취제 금지는 기각했다.

		사 00	사 100	제) 및 저자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취재금지를 청구했다.	장완익 정연순 정재훈, 박민정	서울동부지법 2015가합10273 (가처분이의)	2015. 9. 30
--	--	------	-------	--	---------------------	----------------------------------	-------------

계류중



K36	"제국의위안부"명에 훼손 사건	나눔의 집 거주 전 "위안부"피해자 9명	박유하 외 1명	K35사건 가처분 결정 전에 판매된 이 사건 서적에 대해 저자의 출판사 대표자에 대해 원고 1인당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홍장미 양승봉	서울동부지법 2014가합104726	2014. 6. 17	2016.1.13인용	저자인 피고 박유하에 대해 원고 1인당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고, 출판사 대표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고법 2016나2009351	2016. 2. 12	계류중	
K37	히타치 조선(日立造船) 소송	히타치 조선 전 정용공 1명	히타치 조선	1억2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민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5317633 2015가합 577793(합의부 이송 후)	2015. 11. 14	2016. 9. 21일부 인용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2016나2070582	2016. 10. 7	2019. 1. 11인용	K12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9다208021	2019. 1. 15	계류중	
K38	유족회 집단 소송 (2차)	전 정용공 등 667명	일본기업 69사 ※주1)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회장 최상용)에 의한 집단 소송.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장영기 박병준 홍순혁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1064	2015. 4. 21	계류중	
K39	유족회 집단 소송 (3차)	전 정용공 등 87명	일본기업 17사 ※주2)	위와 같음	장영기 박병준 홍순혁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13718	2015. 5. 22	계류중	
K40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3차소송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1명	후지코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장완익 김미경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92707	2015. 5. 22	2017.3.16인용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2016나21113	2017. 4. 15	2018. 1. 23인용	K12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9다220021			
						집행정차	2019. 3. 13	2019. 3. 20	대청나찌유압공업주식 압류신청 압류명령 매각명령 신청
K41	신일철 3차 소송	전 정용공 1명 유족 3명	신일철주금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장완익 김미경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86115	2015. 5. 22	2016.8.19인용	1억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56389	2016. 9. 5	2018.11.29인용	K12사건 대법원판결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8다47533	2018. 12. 17	계류중	
K42	미쓰비시 나고야 근로정신대 3차 소송	전 근로정신대 피해자 2명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1인당 1억536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정희	광주지법 2015가단513249	2015. 5. 22	2017. 8. 8인용	피해자 1인당 1억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했다.
						광주지법항소합의부 2017나599993		2018.12.14인용	소멸시효 기산점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8. 10. 30라고 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2019다203644	2018. 12. 28	계류중	
K43	피폭자 손해배상청구 (2차①)	원폭피폭자 230명	대한민국	K31사건과 같음	최봉태	서울남부지법	2015. 10. 16	2016. 7. 21기각 (확정)	정부의 조치는 불충분하지만, 의무에 위배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서 기각했다.
K44	피폭자 손해배상청구 (2차②)	원폭피폭자 141명	대한민국	K31사건과 같음	최봉태	서울북부지법	2015. 10. 16	2016. 8. 31기각	원고들의 연령이나 피해 구제의 절박성에 비추어 정부의 조치는 미비하지만, 외교교섭은 계속하고 있어, 중재수속에 이행하지 않다고 해도 불법행위의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서 기각했다.
K45	전 일본군 "위안부" 유족 보상청구 소송	2010년에 사망한 전 일본군 "위안부"의 유족 1명	대한민국여성가족부장관	정부의 지원이 생존 피해자에 한정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보상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016. 5. 27각하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특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했다.
K46	한일 전화 수뇌회담에 관한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통령비서실장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해 2015. 12. 28. 박대통령과 아베수상이 전화회의를 했는데, 그 때 아베수상이 "위안부문제를 포함한 한일간의 재산·정구권문제는 한일정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완료라는 우리 나라 입장에는 변함없는데"라고 발언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서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측 발표에는 이 부분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원고는 위 아베 발언에 대해 박대통령이 회담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대통령비서실장이 비공개 결정을 했으므로 취소를 청구했다.	방서은	서울행정법원	2016. 2. 29	2017. 1. 6기각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서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누36528	2017. 1. 26	2019. 2. 22각하	해당 정보는 이미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각하했다.
K47	"위안부 한일합의"관련문서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소송	송기호	외교부장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위안부 한일합의에 있어서 양국이 발표문에 "군의 관여"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강제연행의 사실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위안부"등의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외교부가 비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청구했다.	노주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5698	2016. 3. 17	2017. 1. 6인용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해서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4263	2016. 1. 23	2019. 4. 18기각	공개를 인정한 1심판결을 취소했다.
K48	"한일위안부합의" 위헌 헌법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 사망피해자 8명의 유족		정부는 "위안부합의"로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 실현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등 헌법상의 의무에 위배하고, 피해자는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에서 외교적 보호를 받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253	2016. 5. 27	계류중	
K49	전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 일본군 "위안부" 12명	대한민국	"위안부합의"는 2011. 8. 30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적한 위헌상태를 영속화하는 것이라고 해서, 생존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묘희 이혜정 최봉태 이동준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2135	2016. 8. 30	2018. 6. 15기각	"위안부합의"는 원고들의 일본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피고는 외교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의의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서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6050	2018. 6. 27	계류중	
K50	다이셀 가압류 청구	강제 정용 피해자 유족 4명	다이셀세프티시스템즈코리아	앞으로 피해자 1인당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해서, 1인당 1000 만원을 가압류 신청했다. (피고는 일본 기업 다이셀의 한국 자회사)	권오영	대구지법	2016. 9. 9	계류중	

K51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일본군 「위안부」 생존피해자 11명, 사망피해자 5명의 유족	일본국	일본국에 대해 피해자 1인당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탈리아 대법원 치비테라사건 판결을 인용해서 반인권적 범죄행위 등 강행규범에 위배하는 국가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국가는 외국의 민사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외 20여명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80239	2016. 12. 28	계류중	일본국(외무성)이 소장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나, 법원은 2019. 3. 8 공지송달(公示送達) 절차를 하고 5. 9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 일본정부는 응소하지 않는 채 5. 21.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K52	원폭피해자 정정	원폭피해자 5명	미국정부, 한국정부, 듀폰(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보잉(The Boeing Company),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Corporation)	원폭 투하 행위가 위법행위고, 미국이 이에 국가책임이 있음을 확인할 것 미국이 원폭 투하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공개하고 사죄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한 협의를 이행할 것 한·미 정부, 원폭 관련 기업체들이 한국인 피해자 실태 진상조사에 협력할 것 피해회복 재단을 만들고,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봉태 외 28명	대구지법→서울중앙지법(이송) 2017가합585378	2017. 8. 3	계류중	대구지법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송. 이 법원은 한국정부에 대해서만 정정제기를 통지했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 정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앞으로 소송 절차에 이행하게 된다.
K53	한일청구권자금 무상 3억불 환수 및 1억 보상 청구 소송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1명, 사망 피해자 5명의 유족	대한민국정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지급된 청구권자금을 환수하고 각 정용피해자와 유족 9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2017. 8. 14	계류중	
K54	강제동원피해자 소송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4명, 사망 피해자 6명의 유족 27명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일본코크스공업	2018. 10. 30 신일철주금사건 대법원 판결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대해 신고한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최고령 원고는 101세. 일본코크스공업은 미쓰이광산의 후신, 미이케 탄광에 동원되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배상을 청구했다.	12명	서울중앙지법	2019. 4. 4	계류중	
K55	강제동원피해자 광주 소송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사망자 13명의 유족 51명	미쓰비시머티리얼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코크스공업 스미세키홀딩스 일본제철 J X금속 후지코시 히타치조선 니시마쓰건설	2018. 10. 30 신일철주금사건 대법원 판결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에 대해 신고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생존피해자중 2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후지코시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사망자중 6명은 일본에서 사망한 피해자이다. 형식적으로는 피고 기업마다 9건의 소송으로서 제기되어, 니시마쓰건설에 대한 사건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기되었다.	19명	광주지법 2019가합53582 2019가합53599 2019가합53636 2019가합53636 2019가단513001 2019가소526797 2019가단513032 2019가소526704 목포지원 2019가소73814	2019. 4. 29	계류중	

주1 피고기업은 다음과 같다.
요코하마교부 하코다테도쓰쿠 시나가와리후라쿠도리즈 다이헤이요쿠하스 시미즈건설 스미토모화학 스미세키홀딩스 구마가이구미 노가미 오바야시구미 히로노구미 안도하자마 후지타 닛치쓰 다이조 제팬에너지 쿠보타 IHI 사토공업 스미토모금속광산 전기화학공업 다테쓰광업 니치유 닛산화학공업 닛산자동차 일본동운 일본국소다 일본야간공업 히타치조선 우베고산 오지제지 이와타치자키건설 신타에스미킨 니가타조선 쇼와전기철강 고바야시공업 이시하라산업 미쓰비시중공업 니시마쓰건설 쇼반고산 미야케구미 미쓰이조선 미쓰이마쓰시마산업 미쓰이금속광업 모리나가제과 미쓰비시창고 미쓰비시전기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일본국유선 산코기센 산요특수제강 야마구치합동가스 도비시마건설 후카이도탄광선박 마쓰모토구미 아소시멘트 가치마건설 도호야엔 다이세이건설 스가와라건설 후루카와기계금속 가쿠이치카세이 린카이닛산건설 라사공업 파나소닉 미쓰비시화학 DOWA홀딩스

주2 피고기업은 다음과 같다.
스미토모석탄광업 주식회사(변경후:스미세키홀딩스 주식회사) 제팬에너지 스미토모금속광산 닛산화학공업 우베고산 이와타치자키건설 미쓰비시중공업 니시마쓰건설 미쓰이금속광업 미쓰비시 마테리아루 야마구치합동가스 도